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　　호

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9월 25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 시행(7.10자)에 따라 상위 조례규정에 맞게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삭제(안 제4조2항, 제8조제1항, [별표1])

나. 수강료 출납처리 계좌 변경(안 제8조제4항)

- “세외세출외 현금 계좌”에서 “주민자치위원회 명의 계좌”로 변경

다.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 삭제(안 제10조, [별표2]))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반영(제19조제2항, 제27조제1항)

- 수탁운영자심사위원회,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토록 개정

3. 참고사항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남구청장(참조: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・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주소 : (우편번호 135-705),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
강남구청 자치행정과

- 담 당 : 이동진
- 연락처 : 전화 02)3423-5214, 팩스 02)3423-8823
- E-mail : borges@gangnam.go.kr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끝.